

『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1월 5일

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,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(안 제4조)
 -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사업자에 재정적 지원 등
 - －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 하도록 알선한 경우

-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·판매하는 경우
-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(안 제5조)

-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업소에 홍보지원 등
 -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
 -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

○ 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(안 제7조)

-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
- 안내소의 업무
 -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
 - 국내·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
 - 국내·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
 -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관광업무 위탁(안 제10조)

-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
- 대상 업무
 - 관광안내소 운영

-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
- 국내·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
- 관광기념품 공모전
-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참고사항

- 「관광진흥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우리시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, 안 제5조에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 지원, 안 제7조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있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인센티브 관광으로 관광객 유치 및 단체관광객의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

우선적으로 체류형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 예술
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
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